

리플릿 활용 가이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Q1. 로고를 추가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메인 표지의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스티커(가로 1cm*세로 3.5cm)로 제작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유족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j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j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

기관 CI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Q1. 로고를 추가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메인 표지의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스티커(가로 1cm*세로 3.5cm)로 제작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환자 및 환자가족의 결정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

기관 CI

연명의료 결정제도

환자 및 환자가족의 결정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Q2. 연락처 및 약도를 표기해도 되나요?

- A. 네.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관 담당자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기입 가능하며 하단 이미지의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스티커(가로 8cm*세로 4cm)**로 제작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기관명 | **오시는 길(주소)**
02-1234-5678

내용구성은 자유입니다.

EX)

Q2. 연락처 및 약도를 표기해도 되나요?

- A. 네.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기관 담당자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기입 가능하며 하단 이미지의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스티커(가로 8cm*세로 4cm)로 제작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명: 오시는 길(주소)
02-1234-5678
내용구성은 자유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